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사전투표참관인 인원 수 제한 〉

■ 채현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628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사전투표참관인 인원 수 제한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채현일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4. 9. 4.
3. 회 부 일 : 2024. 9.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로 2명의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신고하도록 하되, 사전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인에 달할 때까지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반대로 후보자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많은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어, 사전투표소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투표소의 투표참관인의 경우와 같이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도 최대 8명으로 하되,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8명이 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지정하도록 보완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162조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사전투표참관인 인원 수 제한(안 제162조제3항)

개정안은 사전투표참관인 인원을 투표참관인과 동일하게 최대 8인으로 규정하되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 사람을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2조(사전투표참관) ① . ② (생략) <u><신설></u>	제162조(사전투표참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사전투표참관인은 사전투표소마다 8명으로 하되, 제2항에 따라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 사람을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한다. 이 경우 후보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우선 선정한 후 추첨에 의하여 8명을 지정하고, 후보자수가 8명에 미달하되 후보자가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선정한 사람을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다.</u>
③ ~ ⑤ (생략)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

	지와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일반투표소의 투표참관인 수를 8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사전투표소의 사전투표참관인 수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즉, 일반투표소의 경우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인의 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투표참관인의 수는 투표소마다 8명으로 하되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에 의하여 지정한 자를 투표참관인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사전투표소의 경우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로 2인의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언제든지 교체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투표참관인의 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개정안은 사전투표참관인 인원을 투표참관인과 동일하게 최대 8인으로 규정하되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추천에 의하여 지정한 사람을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하려는 것으로,

사전투표참관인의 경우 투표참관인과 달리 선정 인원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선정된 사전투표참관인의 수가 과다할 경우 참관인의 좌석 확보 등 사전투표소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사전투표소를 원활히 운영하려는 취지로 보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20대 대통령선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기준으로 사전투표 참관인은 각각 54,185명, 54,856명, 98,080명이었고 참관인 수당으로 각각 271억 900만원, 27억 4,300만원, 98억 800만원이 집행되었음.

이들 선거에서 각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참관인이 8명을 초과한 인원의 합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20대 대통령선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기준으로 각각 9,713명, 10,389명, 45,444명이었고, 이들에 대한 수당으로 각각 9억 7,000만원, 10억 3,900만원, 45억 4,0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됨.

<제21대 국선, 제20대 대선, 제22대 국선 사전투표참관인 관련 재정 소요>

(단위: 명, 백만원)

선거명	수당	참관인수	소요예산	8명 초과*	절감액	비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	5만원	54,185	2,709	9,713	486	국비
제20대 대통령선거	5만원	54,856	2,743	10,389	520	국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10만원	98,080	9,808	45,444	4,544	국비

*사전투표 1일차 및 2일차의 사전투표참관인(교체·교대한 사전투표참관인 포함)을 평균하여 8명(연인원 16명) 초과

*전국동시지방선거는 현행법 제213조제4항에 따라 사전투표참관인을 8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안은 사전투표의 사전투표참관인 수를 선거일의 투표참관인 수와 동일하게 최대 8인으로 제한하려는 것으로, 참관인의 좌석 확보 등 사전투표소의 운영적인 측면 및 선거비용 절감의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개정의견을 2023. 1. 제출한 바 있음.

[위원회 개정의견(2023. 1.)]

[(사전)투표참관인 신고방법 등 개선(§ 161, § 162, § 213)]

현 행

- 사전투표참관인의 경우 사전투표소별 인원 제한이 없음.
- 정당 등이 선정한 투표참관인이 없거나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4명에 미달하는 때에 읍·면·동위원회가 4명에 달할 때까지 선정함.

개정 의견

- 사전투표소의 참관인을 8명 이내로 함.
- 위원회가 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를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투표참관인밖에 없는 때로 함.

제안이유

- 사전투표참관인도 투표참관인과 마찬가지로 사전투표소마다 8명 이내로 제한하여 사전투표소 운영의 공간확보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 2 이상의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이 있을 경우 공정성 담보가 가능할 것이므로 읍·면·동위원회가 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를 사전투표 참관인의 예와 같이 지정하여 투표참관인 확보의 어려움을 줄이려는 것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참관인 수당 인상 등으로 인한 선정·신고 참관인 수 증가로 사전투표 관리 및 국가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사전투표참관인 수에 제한을 두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